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 등 사후관리 규제 완화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는 용도세율의 적용·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한 용도 외 사용금지기간 및 양도·양수금지기간을 정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고시입니다. 관세청에서 2024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동 고시의 개정내용을 발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I. 개정 이유

- 관세법 개정(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
- 사후관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및 고시 규정 보완

### II. 주요 개정내용

#### 1.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를 추가(제2조)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인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2818.30-9000)’이 용도세율 적용으로 사후관리 대상 지정
- 용도세율 적용 신청서 및 사후관리 생략 대상을 전용물품 승인물품으로 명확화(제8조)
  - \*관세법 개정으로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세관장 승인’ 법적근거 마련(관세법 제83조 제1항 단서)

#### 2. 사후관리 규제 완화

- 관세법 제93조 제18호(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생략(제3조)
- 전용물품 승인절차 개선(제10조)
  -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 없이 관할지 세관에 신청
  - 구비서류 중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사본 제출 생략
- 재수출면세 적용물품 멸실신고, 폐기 승인 신청은 해당 물품 관할 세관장에게도 신청 가능(제13조, 제14조)
- 제1214.90-9090호 사료용 식물 사후관리 생략(별표1의 가 → 별표1의 나)

### 3. 고시 규정 보완

- 과태료 처분 전 시정조항 폐지(제35조)

## III. 시행일자

- 2024년 5월 13일

### | 첨부자료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요약서

[붙임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신규조문대비표

[붙임3]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 | Contact



황혜준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70-4353-1597

E hjwang2@esein.co.kr



이재훈 관세사 / Senior Manager

T 070-4353-1553

E jhlee2@esein.co.kr



| 세인 홈페이지 | Newsletter 더보기 | 구독신청 |

세인관세법인의 뉴스레터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세인관세법인의 홈페이지 또는 위의 컨설턴트에게 연락하시어 확인 바랍니다.

The newsletter of SEIN Customs & Auditing Corp. is published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general information and does not include any official views or legal opinions. For more details, please check our website or contact the consultants mentioned above.

Copyright 2024 SEIN Customs & Auditing corp. All rights reserved.